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3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의자 : 김형동 · 고동진 · 우재준
박정하 · 박정훈 · 임이자
박대출 · 서명옥 · 조지연
안철수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